

#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93호 2018. 1. 29.(월요일)

##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259호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8-3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8
- 하동군 고시 제2018-4호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 13
- 하동군 고시 제2018-6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14
- 하동군 고시 제2018-7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목홍\*,엄영\*)..... 16
- 하동군 고시 제2018-9호 재해위험 저수지·댐 지정고시..... 17

##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18-9호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8

##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8-5호 2018/2019년 해양수산업 신청공고..... 40
- 하동군 공고 제2018-15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46
- 하동군 공고 제2018-21호 2018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제도 공고..... 47
- 하동군 공고 제2018-30호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수, 주민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 공표..... 63
- 하동군 공고 제2018-58호 2018년 하동군 양성평등사업 지원 공고..... 67
- 하동군 공고 제2018-58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공고..... 71

회 람									
--------	--	--	--	--	--	--	--	--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월 29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259 호

##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설치된 자활기금의”을 “하동군 자활기금 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2조를 제3조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설치 및 존속기한) ① 하동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자활기금 운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

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중전의 제2조)의 제목“(기금의 조성)”을“(세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성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적립기금(당초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승계)”을 “적립금”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사업의 범위)”를“(세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특별회계의 세출”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군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기금의 관리·운용)”을“(특별회계 관리·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금은”을 “특별회계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을 “특별회계”로, “기금계좌”를 “특별회계 계좌”로,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를 “관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를 “제3조”로, “기금은”을 “특별회계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금 및 이자수입금”을 “이자 등 수입금”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한다.”를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로 한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여된 대여자금은 이 조례에 따라 대여된 것으로 보고, 제9조제3항에 따른 이자를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현	행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기금의 구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하동군의 출연금 및 적립기금 (당초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승계)
2. ~ 6. (생략)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조(목적) -----  
-----  
-----  
하동군 자활기금 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  
--.

제2조(설치 및 존속기한) ① 하동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자활기금 운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  
-----  
----- 한다.

1. ----- 적립금
2. ~ 6.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

- 1. ~ 7. (생략)

<신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2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 및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수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1. ~ 3. (생략)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주민행복과장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

-----  
-----.

- 1. ~ 7. (현행과 같음)
- 8. 군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5조(특별회계 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

-----.

② ----- 특별회계의 ----- 특별회계  
계좌----- 관리한다.

③ 제3조----- 특별회계  
는 -----  
-----.

- 1. ~ 3. (현행과 같음)

④ ----- 이자 등 수입금-----  
-----  
-----.

제14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  
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  
다.

③ (생 략)

<신 설>

제17조 (생 략)

-----  
-----.  
-----  
-----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수입과 지출에 관  
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8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하동군 고시 제 2018 - 3 호

###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지적기준점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측량기준점 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 하 동 군 수

#### ■ 지적도근점(폐기)

순번	점종류	점번호	X좌표	Y좌표	토지소재지	표지재질	설치일자	원점
1	도근점	486	182095.770	275021.110	34021-전대리	기타	2003-05-27	중부
2	도근점	487	182040.890	274905.780	34021-전대리	기타	2003-05-27	중부
3	도근점	490	181162.010	274950.770	34022-애치리	기타	2003-05-27	중부
4	도근점	492	181366.860	275201.610	34022-애치리	맨홀식	2003-05-27	중부
5	도근점	494	181033.930	275169.120	34022-애치리	기타	2003-05-27	중부
6	도근점	495	180659.920	275070.890	34022-애치리	기타	2003-05-27	중부
7	도근점	497	180584.390	275158.740	34022-애치리	기타	2003-05-27	중부
8	도근점	506	184031.450	275465.550	34021-전대리	철재	1999-06-30	중부
9	도근점	508	182242.290	275159.870	34021-전대리	기타	2003-05-26	중부
10	도근점	509	179131.510	274278.540	34024-횡천리	기타	2003-05-27	중부
11	도근점	510	179094.200	274069.610	34024-횡천리	기타	2003-05-27	중부
12	도근점	511	179030.650	273849.070	34024-횡천리	기타	2003-05-27	중부
13	도근점	512	178964.160	273791.670	34024-횡천리	맨홀식	2003-05-27	중부
14	도근점	513	179368.910	273826.630	34024-횡천리	맨홀식	1999-08-27	중부
15	도근점	516	179253.200	273787.390	34024-횡천리	철재	1999-08-27	중부
16	도근점	517	179239.070	273816.930	34024-횡천리	기타	1999-08-27	중부
17	도근점	532	179233.410	273828.910	34024-횡천리	철재	1999-08-27	중부
18	도근점	535	182381.990	273826.290	34025-월평리	철재	2000-07-06	중부
19	도근점	540	177277.370	272910.710	34027-학리	기타	1999-04-20	중부



20	도근점	541	177439.440	272910.080	34027-학리	기타	1999-04-20	중부
----	-----	-----	------------	------------	----------	----	------------	----

■ 지적도근점(폐기)

순번	점종류	점번호	X좌표	Y좌표	토지소재지	표지재질	설치일자	원점
21	도근점	542	177586.800	272973.340	34027-학리	기타	1999-04-20	중부
22	도근점	544	178126.120	273559.250	34027-학리	기타	2005-06-28	중부
23	도근점	545	178329.280	273587.080	34024-황천리	기타	1999-04-20	중부
24	도근점	554	185054.870	275006.770	34021-전대리	철재	1998-09-22	중부
25	도근점	555	185235.730	274985.070	34021-전대리	철재	1998-09-22	중부
26	도근점	565	181750.870	275798.970	34022-애치리	철재	1999-06-30	중부
27	도근점	566	181682.740	275795.650	34022-애치리	철재	1999-06-30	중부
28	도근점	567	181693.390	275855.430	34022-애치리	철재	1999-06-30	중부
29	도근점	569	181561.780	275772.200	34022-애치리	철재	1999-06-30	중부
30	도근점	571	181301.540	275570.800	34022-애치리	철재	1999-06-30	중부
31	도근점	575	179447.690	273515.270	34024-황천리	기타	2002-08-17	중부
32	도근점	576	179701.510	273493.720	34024-황천리	기타	2002-08-17	중부
33	도근점	577	179566.970	273482.120	34024-황천리	기타	2002-08-17	중부
34	도근점	578	179527.610	273410.860	34024-황천리	기타	2002-08-17	중부
35	도근점	579	177861.730	272587.400	34026-남산리	기타	1998-04-18	중부
36	도근점	580	177648.100	272587.070	34026-남산리	맨홀식	1998-04-18	중부
37	도근점	582	177243.330	272601.970	34026-남산리	맨홀식	1998-04-18	중부
38	도근점	590	178120.560	272177.370	34026-남산리	철재	2002-04-09	중부
39	도근점	593	181450.050	273820.710	34025-월평리	기타	1995-06-15	중부
40	도근점	594	181611.760	274049.760	34025-월평리	기타	1995-06-15	중부
41	도근점	595	179013.750	273773.240	34024-황천리	철재	2005-10-21	중부
42	도근점	597	179099.390	273830.420	34024-황천리	기타	2005-10-21	중부
43	도근점	598	179146.400	273855.360	34024-황천리	기타	2005-10-21	중부
44	도근점	602	179164.430	274033.530	34024-황천리	맨홀식	2005-10-21	중부
45	도근점	603	179153.330	273949.810	34024-황천리	기타	2005-10-21	중부
46	도근점	604	179091.070	273952.650	34024-황천리	철재	2005-10-21	중부
47	도근점	605	179259.740	273773.690	34024-황천리	철재	2005-10-21	중부
48	도근점	606	179167.600	273798.020	34024-황천리	기타	2005-10-21	중부
49	도근점	607	175304.570	272325.220	34027-학리	철재	2005-11-14	중부
50	도근점	611	177019.480	272939.390	34027-학리	철재	2005-11-14	중부
51	도근점	612	177620.360	272910.280	34027-학리	철재	2005-11-14	중부
52	도근점	614	177817.030	273194.540	34027-학리	철재	2005-11-14	중부
53	도근점	619	178659.250	273706.600	34024-황천리	철재	2005-11-14	중부
54	도근점	621	178964.130	273791.600	34024-황천리	맨홀식	2005-11-14	중부
55	도근점	624	179178.690	274526.070	34024-황천리	철재	2005-11-14	중부
56	도근점	625	179142.000	274679.360	34024-황천리	기타	2005-11-14	중부
57	도근점	626	179191.500	274853.190	34023-여의리	철재	2005-11-14	중부
58	도근점	627	179226.480	275239.920	34023-여의리	철재	2005-11-14	중부
59	도근점	628	179207.020	275346.660	34023-여의리	철재	2005-11-14	중부
60	도근점	629	179264.990	275466.670	34023-여의리	철재	2005-11-14	중부
61	도근점	630	179411.260	275143.450	34023-여의리	기타	2005-11-14	중부
62	도근점	631	179374.850	274882.280	34023-여의리	철재	2005-11-14	중부
63	도근점	632	179368.130	274726.740	34023-여의리	철재	2005-11-14	중부
64	도근점	633	179243.250	274659.950	34023-여의리	기타	2005-11-14	중부
65	도근점	637	178554.930	274004.020	34024-황천리	철재	2005-11-15	중부
66	도근점	641	178609.310	274264.310	34024-황천리	철재	2005-11-15	중부
67	도근점	642	178699.710	274479.350	34024-황천리	기타	2005-11-15	중부
68	도근점	643	178822.910	274609.180	34024-황천리	기타	2005-11-15	중부
69	도근점	644	178782.620	274325.990	34024-황천리	철재	2005-11-15	중부
70	도근점	645	178862.270	274191.090	34024-황천리	맨홀식	2005-11-15	중부

### ■ 지적도근점(폐기)

순번	점종류	점번호	X좌표	Y좌표	토지소재지	표지재질	설치일자	원점
71	도근점	646	179017.100	274133.230	34024-횡천리	기타	2005-11-15	중부
72	도근점	868	175711.440	280099.170	37027-월운리	기타	2004-07-09	중부
73	도근점	869	175782.470	280140.060	37027-월운리	기타	2004-07-09	중부
74	도근점	874	171071.510	282143.190	37021-진교리	철재	2004-03-23	중부
75	도근점	879	170144.140	282632.900	37021-진교리	기타	2004-08-09	중부
76	도근점	880	170420.280	282273.110	37021-진교리	맨홀식	1995-06-09	중부
77	도근점	881	172807.440	283123.000	37028-송원리	기타	1993-06-18	중부
78	도근점	886	172423.600	283922.830	37029-고이리	철재	1998-08-06	중부
79	도근점	891	170301.380	281454.570	37022-백련리	기타	2005-05-09	중부
80	도근점	892	167235.890	283530.040	37025-양포리	철재	2000-07-07	중부
81	도근점	894	167390.560	283513.290	37025-양포리	철재	2000-07-07	중부
82	도근점	898	167871.900	283054.410	37025-양포리	철재	2000-07-07	중부
83	도근점	901	168804.480	283145.140	37024-고룡리	철재	2000-07-07	중부
84	도근점	917	170028.950	278979.900	37022-백련리	철재	1998-07-07	중부
85	도근점	929	166750.810	283342.770	37025-양포리	철재	1998-06-08	중부
86	도근점	937	166904.970	283068.180	37025-양포리	철재	1998-06-08	중부
87	도근점	938	166947.050	283244.150	37025-양포리	철재	1998-06-08	중부
88	도근점	939	166886.170	283191.510	37025-양포리	철재	1998-06-08	중부
89	도근점	943	170446.480	283612.320	37028-송원리	기타	2002-06-26	중부
90	도근점	950	170422.590	282199.510	37021-진교리	맨홀식	1996-06-09	중부
91	도근점	956	170074.160	282683.790	37021-진교리	기타	2004-08-09	중부
92	도근점	960	169791.220	282628.770	37021-진교리	철재	2004-08-09	중부
93	도근점	962	169663.390	282587.120	37024-고룡리	기타	2004-08-09	중부
94	도근점	976	169973.710	282591.900	37021-진교리	철재	2004-08-09	중부
95	도근점	977	169137.020	278176.740	37023-안심리	기타	2000-05-09	중부
96	도근점	978	169189.220	278365.180	37023-안심리	기타	2000-05-09	중부
97	도근점	979	169291.270	278564.650	37023-안심리	기타	2000-05-09	중부
98	도근점	981	169299.520	278670.830	37023-안심리	맨홀식	2004-08-09	중부
99	도근점	982	170298.740	281283.340	37022-백련리	기타	1998-07-16	중부
100	도근점	983	170250.390	281156.840	37022-백련리	기타	1998-07-16	중부
101	도근점	989	170120.450	282169.830	37021-진교리	철재	2004-08-09	중부
102	도근점	993	169864.740	282498.000	37021-진교리	기타	2004-08-09	중부
103	도근점	996	170597.880	282197.300	37021-진교리	표석	1995-06-09	중부
104	도근점	1001	171819.890	282030.790	37026-관곡리	철재	2004-03-23	중부
105	도근점	1009	172408.890	281260.070	37026-관곡리	기타	2004-03-23	중부
106	도근점	1010	172554.680	280978.350	37026-관곡리	철재	2004-03-23	중부
107	도근점	1011	172739.030	280711.230	37026-관곡리	철재	2004-03-23	중부
108	도근점	1013	173010.440	280552.500	37026-관곡리	철재	2004-03-23	중부
109	도근점	1014	173190.620	280567.250	37026-관곡리	철재	1998-07-16	중부
110	도근점	1015	173243.250	280458.400	37026-관곡리	철재	1998-07-16	중부
111	도근점	1020	175666.000	280467.180	37027-월운리	기타	2004-07-08	중부
112	도근점	1021	175657.530	280264.950	37027-월운리	기타	2004-07-08	중부
113	도근점	1027	171775.410	283177.800	37028-송원리	기타	2004-06-30	중부
114	도근점	1028	171888.570	283180.130	37028-송원리	기타	2004-06-30	중부
115	도근점	1029	171970.300	283113.570	37028-송원리	기타	2004-06-30	중부
116	도근점	1032	173271.650	282895.110	37029-고이리	기타	2004-06-30	중부
117	도근점	1033	173201.740	282894.550	37029-고이리	기타	2004-06-30	중부
118	도근점	1035	172933.360	282908.380	37028-송원리	기타	2004-06-30	중부
119	도근점	1036	172848.960	282847.760	37028-송원리	기타	2004-06-30	중부
120	도근점	1037	172742.790	282891.460	37028-송원리	기타	2004-06-30	중부

■ 지적도근점(폐기)

순번	점종류	점번호	X좌표	Y좌표	토지소재지	표지재질	설치일자	원점
121	도근점	1039	172717.230	282991.760	37028-송원리	철재	2001-05-25	중부
122	도근점	1043	171558.840	283004.950	37028-송원리	철재	2001-05-25	중부
123	도근점	1044	171520.380	282843.320	37028-송원리	철재	2001-05-25	중부
124	도근점	1047	171362.820	282969.280	37028-송원리	철재	2001-05-25	중부
125	도근점	1048	171436.290	283097.830	37028-송원리	철재	2001-05-25	중부
126	도근점	1053	166002.500	283385.820	37030-술상리	기타	2002-07-09	중부
127	도근점	1058	165955.140	283093.500	37030-술상리	기타	2002-07-09	중부
128	도근점	1063	168977.750	283563.940	37028-송원리	기타	1996-07-25	중부
129	도근점	1064	169082.510	283719.230	37028-송원리	기타	1996-07-25	중부
130	도근점	1067	169579.790	283057.060	37028-송원리	기타	1996-07-25	중부
131	도근점	1068	169682.690	283210.620	37028-송원리	기타	1996-07-25	중부
132	도근점	1069	170060.020	282998.620	37028-송원리	기타	1996-07-26	중부
133	도근점	1070	170218.350	283105.200	37028-송원리	기타	1996-07-25	중부
134	도근점	1074	170127.500	283656.970	37028-송원리	기타	1996-07-25	중부
135	도근점	1076	170015.380	283699.670	37028-송원리	기타	1996-07-25	중부
136	도근점	1077	169811.010	283399.860	37028-송원리	기타	1996-07-25	중부
137	도근점	1078	169828.140	283803.620	37028-송원리	기타	1996-07-25	중부
138	도근점	1079	169677.290	283956.610	37028-송원리	기타	1996-07-25	중부
139	도근점	1082	170041.670	282376.190	37021-진교리	철재	1995-06-09	중부
140	도근점	1087	170538.830	279995.650	37022-백련리	철재	2000-05-09	중부
141	도근점	1089	170444.390	280272.270	37022-백련리	맨홀식	2000-05-09	중부
142	도근점	1095	170412.610	281335.590	37022-백련리	표석	2000-05-09	중부
143	도근점	1097	170349.200	281514.190	37022-백련리	철재	2000-05-09	중부
144	도근점	1769	168943.900	282297.820	37024-고룡리	철재	2005-12-12	중부
145	도근점	1776	168515.770	281277.650	37024-고룡리	기타	2005-12-12	중부
146	도근점	1777	168424.280	281067.610	37024-고룡리	기타	2005-12-12	중부
147	도근점	1783	167574.770	281977.760	37025-양포리	철재	2005-12-12	중부
148	도근점	1790	169725.210	279674.940	37022-백련리	철재	2006-03-02	중부
149	도근점	1797	170137.650	279035.870	37022-백련리	철재	2006-03-02	중부
150	도근점	1799	170677.860	278372.040	37022-백련리	철재	2006-03-02	중부
151	도근점	1800	170571.740	278684.190	37022-백련리	철재	2006-03-02	중부
152	도근점	1801	170503.480	278792.910	37022-백련리	표석	2006-03-02	중부
153	도근점	2130	177995.270	272309.040	34026-남산리	기타	2002-04-09	중부
154	도근점	2371	166487.040	283132.540	37030-술상리	기타	1990-07-02	중부
155	도근점	2373	170400.460	280607.670	37022-백련리	철재	2008-11-14	중부
156	도근점	2374	170415.550	280397.710	37022-백련리	기타	2008-11-14	중부
157	도근점	2375	170444.360	280272.310	37022-백련리	기타	2008-11-14	중부
158	도근점	2376	170498.900	280146.170	37022-백련리	기타	2008-11-14	중부
159	도근점	2379	170522.940	279638.790	37022-백련리	철재	2008-11-14	중부
160	도근점	2380	170470.760	279514.000	37022-백련리	철재	2008-11-14	중부
161	도근점	2385	170339.890	279203.400	37022-백련리	기타	2008-11-14	중부
162	도근점	2387	170571.730	278684.170	37022-백련리	기타	2008-11-14	중부
163	도근점	2388	170503.470	278792.890	37022-백련리	표석	2008-11-14	중부
164	도근점	2389	170470.900	278955.980	37022-백련리	철재	2008-11-14	중부
165	도근점	2390	170363.810	279123.680	37022-백련리	철재	2008-11-14	중부
166	도근점	2397	169869.420	279507.510	37022-백련리	철재	2008-11-14	중부
167	도근점	2400	169741.540	279653.020	37022-백련리	철재	2008-11-14	중부
168	도근점	2407	170177.320	279549.600	37022-백련리	철재	2008-11-14	중부
169	도근점	2463	178275.040	273014.420	34026-남산리	철재	2009-07-24	중부
170	도근점	2464	178124.230	272860.880	34026-남산리	철재	2009-07-24	중부

### ■ 지적도근점(폐기)

순번	점종류	점번호	X좌표	Y좌표	토지소재지	표지재질	설치일자	원점
171	도근점	2465	177978.220	272697.990	34026-남산리	기타	2009-07-24	중부
172	도근점	2466	177810.280	272626.850	34026-남산리	기타	2009-07-24	중부
173	도근점	2472	165448.990	283563.540	37030-술상리	철재	2009-11-11	중부
174	도근점	2473	165928.510	284121.000	37030-술상리	철재	2009-11-11	중부
175	도근점	2477	166039.230	283445.360	37030-술상리	기타	2009-11-11	중부
176	도근점	2707	169216.980	278427.410	37023-안심리	기타	2010-11-26	중부
177	도근점	2779	184142.900	275630.950	34021-전대리	철재	2010-12-10	중부
178	도근점	2780	184082.320	275658.570	34021-전대리	철재	2010-12-10	중부
179	도근점	2783	183865.830	275837.630	34021-전대리	철재	2010-12-10	중부
180	도근점	2787	183574.440	275703.490	34021-전대리	철재	2010-12-10	중부
181	도근점	2790	183354.650	275802.670	34021-전대리	철재	2010-12-10	중부
182	도근점	2791	183259.580	275768.560	34021-전대리	철재	2010-12-10	중부
183	도근점	2792	183182.620	275723.220	34021-전대리	철재	2010-12-10	중부
184	도근점	2797	182898.200	275424.110	34021-전대리	철재	2010-12-10	중부

하동군 고시 제2018 - 4호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변경·폐지)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8 년 1 월 4 일

하동군수 (직인) 

수계(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구역		
		지번 및 지목	면적(m <sup>2</sup> )	결정(변경·폐지) 사유
남해	상삼천	296-16 천 외 61필지	16,996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에 의한 변경
	신기천	556 구 외 65필지	24,477	

- 첨부서류: 1. 소하천구역으로 포함된 토지의 세목조서  
2. 해당 소하천구역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하동군 고시 제2018 - 6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 12.

##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로 114 외 1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1. 1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363-3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 장로 114	20180 112	20070 618	공설운동장 앞을 지나가는 도로로 공 공시설명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1055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돌고지로 1147-25	20180 112	20070 618	횡천과 옥종의 경계지점에 있는 재로 서 재를 넘을때 산모퉁이를 돌고 돌 아 넘는다고해서 돌고지재라고한 옛지 명 사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산143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돌고지로 1281-11	20180 112	20070 618	횡천과 옥종의 경계지점에 있는 재로 서 재를 넘을때 산모퉁이를 돌고 돌 아 넘는다고해서 돌고지재라고한 옛지 명 사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산109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돌고지로 1333-143	20180 112	20070 618	횡천과 옥종의 경계지점에 있는 재로 서 재를 넘을때 산모퉁이를 돌고 돌 아 넘는다고해서 돌고지재라고한 옛지 명 사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787-8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181	20180 112	20070 618	도로시점이 악양중심으로 부터 동쪽에 위치하여 방향성에 따라 도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1414-1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적량로 450-182	20180 112	20090 302	적량면의 중앙을 통과하는 간선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1436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적량로 530-8	20180 112	20090 302	적량면의 중앙을 통과하는 간선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평촌리 934-6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728-66	20180 112	20090 302	횡천-청암간 도로로 주 이용도로가 청학동으로 가는 도로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527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968	20180 112	20090 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호리 509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사길 102-10	20180 112	20070 618	명호입구부터 절골까지 도로가 명사길 이라 불리워졌기때문에 명사길로 명 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378-8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소재2길 5-1	20180 112	20070 618	소재라는 옛지명을 사용하여 일련번 호방식의 두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산195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대비 길 97	20180 112	20090 302	정금과서 대비로 이어지는 도로로서 행정리명의 명칭을 합성하여 도로명에 반영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7호

허가 대상자	성 명	목홍균, 엄영인	생년월일(성별)	1970.08.11./1959.08.15.
	전화번호	010-2445-4455, 010-7163-1751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1	700811-1***** 590815-1*****
	주 소	<b>대전광역시 중구 평촌로 111 106동 1405(태평동, 태평아파트) 진주시 말티고개로 131-6, 정원채 401호(초전동)</b>		

장소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1175-3(구), 인근지번: 지례리 산 10(임)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53㎡

(또는

㎡)

목적

건축물

기간

2018. 1. 16. ~ 2023. 1. 15

점용·사용의 유형

토지의 점용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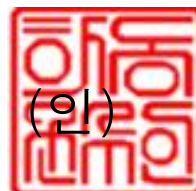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의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1월 16일

하 동 군 수 (인)





하동군 고시 제2018 - 9호

## 재해위험저수지·댐 지정고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 저수지·댐을 지정 고시합니다.

- 아 래 -

저수지명	위 치	규 모			관리자	지정사유	비고
		구역면적 (m <sup>2</sup> )	총저수량 (m <sup>3</sup> )	제당높이			
대방골	경남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763-1 일원	52,000	12,540	5.0	하동군수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	
남당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165-2 일원	62,000	13,000	6.2	하동군수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	
호암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홍룡리 1199-2 일원	75,000	11,210	7.5	하동군수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	
삼박골	경남 하동군 진교면 월운리 51-2 일원	74,000	9,800	5.0	하동군수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	

2018년 1월 24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2018 - 9호

##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년 1월 2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2. 개정 이유

- 전통시장은 화재위험이 높아, 보험사가 제한적으로 보험을 인수하고 상인은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 저조
- 이에, 정부에서 전통시장에 특화된 화재공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시장상인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공설시장 화재공제 가입 의무화 추진 필요
- 경남도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 조치결과에 따라 내용의 일부를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공설시장 화재공제 가입 의무화를 위한 공제가입 규정 신설 - 안 제6조의2
- 나. 시장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사용자료 징수기준을 별표 2와 같이 개정 - 안 별표2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8년 1월 26일까지 하동군(참조: 경제수산물과, 전화 055-880-2822, FAX 055-880-2199, [emperor69@korea.kr](mailto:emperor69@korea.kr))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 임 1.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제가입)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군수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군수가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기준(제9조 관련)

### 1. 상설 및 정기시장의 계속사용

구 분	대상	분류	기 준	사 용 료
상설시장	점포	토지	연간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5
		건물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
	장옥	토지	"	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5
		건물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
	노점	토지	"	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5
	정기시장	점포	토지	"
건물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15
장옥		토지	"	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건물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15
노점		토지	"	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1. 상설시장 : 하동공설시장

2. 정기시장 : 기타시장

※ 관광지로서 특수성이 있는 화개장터 시장 사용료 징수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사용료 기준을 적용한다.

2. 상설 및 정기시장의 수시 및 일시사용

구 분	대 상	분 류	기 준	사 용 료
상설시장	장옥	토지	1일 3.3제곱미터당	300원
		건물	"	500원
	노점	토지	"	200원
정기시장	장옥	토지	"	300원
		건물	"	500원
	노점	토지	"	200원
상설 및 정기시장	채소, 곡물 등 기타	화물차(2t이상)	1일 대당	2,000원
		화물차(2t미만)	"	1,000원
		경운기	"	500원
		손수레	"	300원

※ 상기 사용료는 3.3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며, 사용면적이 중간에 있을 때에는 높은 기준 면적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예 : 3제곱미터는 3.3제곱미터를, 4제곱미터는 6.6제곱미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별표 2]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기준 (제9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colspan="2" rowspan="2">구분</th> <th rowspan="2">기 준</th> <th colspan="2">요액(원)</th> </tr> <tr> <th>1등지</th> <th>2등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상 설 시 장</td> <td>점포</td> <td>3.3m<sup>2</sup>당 월</td> <td>1,960</td> <td>1,120</td> </tr> <tr> <td>장옥</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1,400</td> <td>680</td> </tr> <tr> <td rowspan="2">노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840</td> <td>460</td> </tr> <tr> <td>3.3m<sup>2</sup>당 매시일</td> <td>200</td> <td>100</td> </tr> <tr> <td rowspan="3">노 상</td> <td>화물 자동차</td> <td>매시일 대당</td> <td>1,000</td> <td>700</td> </tr> <tr> <td>경운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700</td> <td>500</td> </tr> <tr> <td>리어카</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500</td> <td>300</td> </tr> </tbody> </table>	구분		기 준	요액(원)		1등지	2등지	상 설 시 장	점포	3.3m <sup>2</sup> 당 월	1,960	1,120	장옥	"	1,400	680	노점	"	840	460	3.3m <sup>2</sup> 당 매시일	200	100	노 상	화물 자동차	매시일 대당	1,000	700	경운기	"	700	500	리어카	"	500	300	<p>제6조의2(공제가입) ① 사용자는 사 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 금수취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 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 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 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 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 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군수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 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군 수가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p> <p>[별표 2]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기준 (제9조 관련)</p> <p>1. 상설 및 정기시장의 계속사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구분</th> <th>대상</th> <th>분류</th> <th>기 준</th> <th>사 용 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상 설 시 장</td> <td rowspan="2">점포</td> <td>토지</td> <td>연간 제공미터당</td> <td>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5</td> </tr> <tr> <td>건물</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지 방 세 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의 1,000분의 25</td> </tr> <tr> <td rowspan="2">장옥</td> <td>토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5</td> </tr> <tr> <td>건물</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지 방 세 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의 1,000분의 25</td> </tr> <tr> <td>노점</td> <td>토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5</td> </tr> </tbody> </table>	구분	대상	분류	기 준	사 용 료	상 설 시 장	점포	토지	연간 제공미터당	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5	건물	"	「지 방 세 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의 1,000분의 25	장옥	토지	"	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5	건물	"	「지 방 세 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의 1,000분의 25	노점	토지	"	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5
구분				기 준	요액(원)																																																								
		1등지	2등지																																																										
상 설 시 장	점포	3.3m <sup>2</sup> 당 월	1,960	1,120																																																									
	장옥	"	1,400	680																																																									
	노점	"	840	460																																																									
		3.3m <sup>2</sup> 당 매시일	200	100																																																									
	노 상	화물 자동차	매시일 대당	1,000	700																																																								
경운기		"	700	500																																																									
리어카		"	500	300																																																									
구분	대상	분류	기 준	사 용 료																																																									
상 설 시 장	점포	토지	연간 제공미터당	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5																																																									
		건물	"	「지 방 세 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의 1,000분의 25																																																									
	장옥	토지	"	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5																																																									
		건물	"	「지 방 세 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의 1,000분의 25																																																									
	노점	토지	"	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5																																																									
	<p>1. 상설시장 : 하동공설시장</p>																																																												



구 분		기 준	요 액(원)		
			1급지	2급지	
정기시 장	점포	1등지	3.3m <sup>2</sup> 당 월	1,680	1,120
		2등지	"	840	560
		3등지	"	280	180
	장옥	1등지	"	1,120	840
		2등지	"	560	460
		3등지	"	180	120
	노점	1등지	3.3m <sup>2</sup> 당 매시일	200	150
		2등지	"	150	100
		3등지	"	100	100
	노상	화물 자동차	매시일 대당	700	500
		경운기	"	500	300
		리어카	"	300	200

- 2. 정기시장(1급지) : 진교, 옥중공설시장
  - 3. 정기시장(2급지) : 기타시장
  - 4. 1등지(2면이상 도로 접합장소), 2등지(1면이상 도로 접한 장소), 3등지(그 외)
- ※ 관광지로서 특수성이 있는 화개장터 시장사용료 징수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한다.

정기 시장	점포	토지	"	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건물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의 1,000분의 15
	장옥	토지	"	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건물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의 1,000분의 15
	노점	토지	"	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 1. 상설시장 : 하동공설시장
  - 2. 정기시장 : 기타시장
- ※ 관광지로서 특수성이 있는 화개장터 시장 사용료 징수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사용료 기준을 적용한다.

### 2. 상설 및 정기시장의 수시 및 일시 사용

구분	대상	분류	기 준	사용료
상설 시장	장옥	토지	1일 3.3제곱미터 당	300원
		건물	"	500원
	노점	토지	"	200원
정기 시장	장옥	토지	"	300원
		건물	"	500원
	노점	토지	"	200원
상설 및 정기 시장	채소, 곡물 등 기타	화물차 (2t이상)	1일 대당	2,000 원
		화물차 (2t미만)	"	1,000 원
		경운기	"	500원
		손수레	"	300원

- ※ 상기 사용료는 3.3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며, 사용면적이 중간에 있을 때에는 높은 기준 면적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예 : 3제곱미터는 3.3제곱미터를, 4제곱미터는 6.6제곱미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현행법령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 ( 제정 ) 1963.01.09 조례 제 25호
- ( 일부개정 ) 1963.07.13 조례 제 34호
- ( 일부개정 ) 1966.07.01 조례 제 106호
- ( 일부개정 ) 1970.12.31 조례 제 172호
- ( 일부개정 ) 1974.02.18 조례 제 270호
- ( 일부개정 ) 1977.01.31 조례 제 371호
- ( 일부개정 ) 1977.03.25 조례 제 410호
- ( 일부개정 ) 1979.07.19 조례 제 503호
- ( 일부개정 ) 1982.06.01 조례 제 645호
- ( 일부개정 ) 1985.06.28 조례 제 892호
- ( 일부개정 ) 1989.08.14 조례 제1115호
- ( 일부개정 ) 1990.10.11 조례 제1199호
- ( 일부개정 ) 2013.04.10 조례 제2001호 하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 전문개정 ) 2013.08.16 조례 제2016호
- ( 일부개정 ) 2015.09.25 조례 제2081호
- ( 일부개정 ) 2017.12.08 조례 제2253호

( 일부개정 ) 2013.04.10 조례 제2001호 하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전문개정 ) 2013.08.16 조례 제2016호  
 ( 일부개정 ) 2015.09.25 조례 제2081호  
 ( 일부개정 ) 2017.12.08 조례 제225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시장의 명칭과 위치 및 장날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군수가 개설한 공설시장을 말한다.
2. "점포"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4. "노점"이란 시장부지 및 인접 도로변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소규모의 이동 좌판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 장옥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용료"란 시장 내 점포, 장옥, 부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를 말한다.
7.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 2 장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시장 점포나 장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사용기간 연장이나 사용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별 지 제1호 및 제1-1호 서식에 의한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점사용에 관하여는 구술신고로써 사용허가를 갈음하되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 결정은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군수가 공개추첨으로 정한다. 다만, 군의 공설시장 특성화 계획과 점포나 장옥의 활용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3년의 기간 내에서 시장사용을 허가하되,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 할 수 있으며, 사

용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 및 제1-1호서식에 의한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2항 단서에 의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2.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점포 및 장육 사용자에게 대하여도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내에서 사용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시장사용을 허가하거나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장사용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시장 사용권은 사용자와 사용희망자간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증을 허가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 사용을 허가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1개월 이상 휴업·폐업 또는 시장사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
- 2. 상속으로 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았을 때
- 3.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
- 4.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제6조(사용자의 관리의무) ① 사용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② 사용자는 군수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 ③ 사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⑤ 사용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권의 양도금지) 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군수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임 대하지 못한다.

- ② 상속 받은 자의 사용기간(갱신요구권 기간을 포함한다.)은 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시장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면적, 업종 및 설비 내역을 변경하였을 때
- 2.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 3. 상품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시장의 오손 및 시장질서 유지상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 4.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5. 사용허가 후 1월 이내에 영업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월 이상 계속 휴업한 때
- 6. 공정한 거래를 위반하거나 영업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 7. 점포나 장육을 사용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때
- 8. 그 밖에 군수가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
-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3 장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월액 징수에 있어 시장 사용 일수가 16일 이상일 때에는 기준액의 전액을, 15일 이하 일 때에는 그 반액을 징수한다.
- ③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사용료 납기) 점포와 장육의 사용료는 1년분을 선납하여야 하며, 노점과 노상의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 사용일에 징수한다. 다만 위탁운영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 <개정 2015.9.25. 조2081>

- 1. 천재지변이나 시설현대화 사업 및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 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용해지를 신고한 때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된 다음날부터 남은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조2081>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시장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원상회복) 시장 사용자가 허가 없이 시장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 시킬 수 있다.

제 4 장 위탁관리

제13조(관리운영) ① 군수는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시장번영회 등), 단체 또는 개인을 시장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고,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②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징수자는 노점과 노상의 시장 관리인이 된다.

③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수탁관리인의 책무) 시장관리인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1. 상거래질서 확립과 환경 및 시설 개선지도
- 2.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지도
- 3. 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 수행
- 4. 관계 법령 준수 및 군수의 지시사항 이행

제15조(관리인의 지정 및 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관리인 지정과 위탁 관리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이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2. 시장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사용료를 징수한 때
- 3.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하는 때
-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제 5 장 위탁징수

제16조(노점사용료 위탁징수)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점과 노상 사용료를 법인(시장번영회 등),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탁징수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번영회와 수의계약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일반경쟁입찰로 결정할 때는 최고낙찰자로 한다.

③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사용료 기준액의 범위안에서 징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수탁징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17조(계약보증금 및 보증인) ① 수탁자는 계약체결 시 보증금을 분할납부할 경우 계약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조2081>

② 제1항의 보증금을 예치하지 못 할 경우에는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조2081>

제18조(수탁징수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 1. 하동군내 주민이 아닌 자
-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개정 2017.12.8.>
- 5.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수탁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9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를 위반한 때
- 2. 위·수탁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제 6 장 보 칙

제20조(지시감독) 군수는 시장관리인이나 위탁징수자에게 시장 관리나 시장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유지관리) 군수는 시장의 운영합리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입주 상인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는 시장번영 회로 하여금 시장내의 청결 질서 유지를 위한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2조(변상금) 군수의 허가없이 시장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 <삭제 2017.12.8.>

제24조(청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8조에 의한 시장 사용 허가의 취소·정지
- 2. 제19조에 의한 위탁징수 계약의 해지

제25조(준용) 시장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래 시행중이던 시장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63.7.13.조34>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조례 하동군 조례 제25호 군시장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징수계약이 체결된 것은 본 조례에 의하여 계약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66.7.1.조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0.12.31.조172>

- ① (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조례) 하동군조례 제25호 및 제34호 제106호 하동군시장사용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74.2.18.조2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7.1.31.조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7.3.25.조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9.7.19.조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2.6.1.조6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6.28.조8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8.14.조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0.10.11.조11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일괄조례개정) 2013.4.10.조2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8.16.조20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허가를 갱신하여야 한다.

③(특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점포를 군수의 허가 없이 승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가 2014년 6월 30일까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15.9.25. 조20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4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 하동군 공설시장 명칭과 위치·장날(제2조 관련)

시장명	위 치	장 날	비 고 (운영방법)
하동공설시장	하동읍 읍내리 249	매월 2일, 7일	상설+ 정기
화개장터	화개면 탑리 726-46		상설
횡천공설시장	횡천면 횡천리 507-2	매월 5일, 10일	정기
계천공설시장	금남면 계천리 355-3	매월 5일, 10일	정기
진교공설시장	진교면 진교리 302-4	매월 3일, 8일	정기
북천공설시장	북천면 직전리 597-1	매월 4일, 9일	정기
옥종공설시장	옥종면 청룡리 124-15	매월 3일, 8일	정기

[별표 2]

###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기준 (제9조 관련)

구 분		기 준	요 액(원)		
			1등지	2등지	
상설시장	점포	3.3m <sup>2</sup> 당 월	1,960	1,120	
	장옥	"	1,400	680	
	노점	"	840	460	
		3.3m <sup>2</sup> 당 매시일	200	100	
	노상	화물자동차	매시일 대당	1,000	700
		경운기	"	700	500
리어카		"	500	300	

구 분			기 준	요 액(원)	
				1급지	2급지
정기시장	점포	1등지	3.3m <sup>2</sup> 당 월	1,680	1,120
		2등지	"	840	560
		3등지	"	280	180
	장옥	1등지	"	1,120	840
		2등지	"	560	460
		3등지	"	180	120
	노점	1등지	3.3m <sup>2</sup> 당 매시일	200	150
		2등지	"	150	100
		3등지	"	100	100
	노상	화물자동차	매시일 대당	700	500
		경운기	"	500	300
		리어카	"	300	200

1. 상설시장 : 하동공설시장
  2. 정기시장(1급지) : 진교, 옥종공설시장
  3. 정기시장(2급지) : 기타시장
  4. 1등지(2면이상 도로 접합장소), 2등지(1면이상 도로 접한 장소), 3등지(그 외)
- ※ 관광지로서 특수성이 있는 화개장터 시장사용료 징수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한다.







[별지 제2호 서식]

## 시장 점포(장옥)사용 허가증(제4조 관련)

① 사용시장 명칭			
② 위            치			
③ 사 용 장 소		사용면적	
④ 사 용 기 간			
⑤ 사 용 목 적			
⑥ 사용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⑦ 허가조건	㉠ 사용자는 사용허가된 점포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 시장 점포사용기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사용을 희망할 때에는 사용만료기일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시장 점포사용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점포내에서는 일체의 주거용 난방시설을 하지 못한다. ㉤ 이동식 난로, 문어발식 전기코드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점포는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점포의 전기, 수도, 전화사용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 점포 내외에 추가시설 또는 설비를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 사용료는 납부 지정기간내 납부하여야 한다. ㉩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제반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위반시에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조치를 감수한다.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별지 제3호 서식]

### 공설시장 사용자 관리대장(제4조 관련)

연 번	허가 구분	성명 (법인·단체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시장 명칭	종류 (점포, 장옥, 기타)	상호 및 호수	면적 (m <sup>2</sup> )	사용 허가 기간
		성별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별지 제4호 서식]

(제5조 관련)

시장사용 변경(휴업,폐업,승계 등) 및 해지 신고서

- 시 장 명 :
- 상호 및 호수 : , 호
- 사용자(허가자) 주소 :
- 사용자(허가자) 성명 : (남·여) 허가번호 :
- 변 경 사 항 : (허가내용, 휴업, 폐업, 승계, 해지, 재산망실 또는 훼손, 기타)
- 변 경 내 용
  - 당초 :
  - 변경 :
- 변 경 사 유 :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제11조 관련)

### 시장 사용료 반환 신청서

○ 시 장 명

○ 상호 및 호수

호

○ 사용자 성명

남·여

○ 보증금반환 신청액

원

○ 신 청 사 유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하동군수 귀하

붙임 2

관련법령(발취)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①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9.]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 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6.21.>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6.21.>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6.7.12., 2017.7.26.>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3.6.21., 2014.7.7., 2016.7.12.>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2016.7.12., 2017.7.26.>  
 ⑧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8.4., 2013.6.21., 2016.7.12.>  
 [전문개정 2009.4.24.]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8 - 5호

## 2018/2019년 해양수산사업 신청공고(안)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8/2019년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 신청방법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일

### 하 동 군 수

#### ■ 신청방법(요령)

1. 대상사업 : 불임내역참조

- 2018년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대상 사업임
- 2019년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시달 시 사업이 변경 될 수 있음
- ※ 불임 사업 외 신규 사업은 하동군 경제수산과로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대상 :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등

3. 신청기간 : 2018. 1. 4.~2018. 2. 5.

4. 신청서 제출기관 : 하동군청(경제수산과), 읍·면 사무소

5. 신청서 안내기관

- 사업담당부서 : 경제수산과 해양개발(880-2443~2445), 어업생산(880-2453~2455)
- 읍·면사무소 : 사업대상지 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
- 유 관 기 관 :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남해사무소,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

6.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군, 읍·면 사무소, 남해사무소, 하동군수협에 비치)
- 사업계획서(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만 작성)
- 보조사업 이력서(보조사업을 받은 실적이 있는 신청자)
-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기록실적이 있는 경우) 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본
- 사업별 시행지침에서 요하는 구비서류

7. 기타사항

- 보조사업 이후 보조사업자가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를 위해 보조금 범위 내에서 부기등기 설정 또는 근저당 등 담보 설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음



## 2018년도 신청대상 해양수산사업

사업명	지원단가	지원율(천원)			신청자격
		계	보조	자담	
<b>계</b>	<b>20건</b>	<b>1,454,837</b>	<b>902,380</b>	<b>552,457</b>	
수산물 저온시설 지원	예산범위 내	204,000	102,000	102,000	어업인 및 단체
수산특산물 포장재 지원	예산범위 내	47,600	23,800	23,800	어업인 및 단체
수산가공품 포장시설 등 지원	예산범위 내	136,000	68,000	68,000	어업인 및 단체
어선인양기 대차 구입지원	대당 5백만원	17,000	17,000	-	어촌(업)계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개소당 98,250천원	98,250	78,600	19,650	양식어업인
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	ha당 210백만원	104,300	73,000	31,300	양식어업인
친환경부품 공급사업	예산범위 내	6,000	4,200	1,800	어업인
저효율노후기관·장비· 설비설치·교체지원	예산범위 내	175,600	105,360	70,240	어선어업인
어선사고예방 시스템구축사업	예산범위 내	24,734	14,840	9,894	어선어업인
다목적 해상공동 작업대 설치 지원	예산범위 내	100,000	70,000	30,000	어촌계
어업재해 대응장비 지원 사업	예산범위 내,	98,033	58,820	39,213	양식어업인
면역증강제 공급사업	예산범위 내	22,000	13,200	8,800	양식어업인
어업생산 기반시설 설치	예산범위 내	85,000	42,500	42,500	어업인, 어촌계, 수협 등
가두리양식어장 액화산소 지원사업	예산범위 내	42,500	42,500	-	가두리양식 어업인
가두리 관리자 현대화 사업	예산범위 내	59,500	42,500	17,000	어업인, 어촌계, 수협 등
고소득 내수면 특산 어종 양식어업 지원	개소당 51백만원	51,000	25,500	25,500	양식어업인
낙시터(유어장) 조성사업	예산범위 내	51,000	34,000	17,000	유어장 지정 어촌계
소형어선 항해장비 지원	대당 4백만원	43,720	30,600	13,120	어선어업인
소형어선 자동화시설 지원	대당 5.5백만원	81,600	48,960	32,640	어선어업인
불가사리 구제사업	예산범위 내	7,000	7,000	-	어업인, 어촌계, 지역환경단체 등

## 2019년도 신청대상 해양수산사업

사업명	지원단가	지원율(%)			신청자격
		보조	융자	자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대당 1백만원	60	-	40	어업인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대당 100백만원	80	-	20	육상해수, 종묘생산어업인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개소당 14.4백만원	100	-	-	어촌휴양마을 지정 어촌계
낙시터 환경개선 사업	유어장 및 낙시터 ha당 1백만원	100	-	-	어촌계
생분해성어구 보급 시범사업	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과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 지급	100	-	-	연안자망 및 통발 어업허가가 있는 어업인
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	가두리양식 어업자	70	-	30	가두리양식 어업자
굴폐각 친환경 처리사업	굴폐각 자원화 처리비용 지원	80	-	20	굴 박신(굴까기) 또는 가공 하는 어업인, 어촌계, 수협 등
친환경부표보급 지원사업	개당 2만원(60ℓ기준)	70	-	30	면허소유자, 연안자망 및 통발 어업허가가 있는 어업인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개당 5천원(60ℓ기준)	40	-	60	면허소유자, 연안자망 및 통발 어업허가가 있는 어업인
고효율어선 유류 절감장비 지원사업	척당 25백만원	60	-	40	연안어업허가 어선 및 관리선 소유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한도액 없음	60	-	40	양식어업인, 영어법인 어촌계, 수협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개소당 국비 10억원	60	-	40	수협, 어촌계, 어업인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사업	대당 30백만원	80	-	20	양식어업인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톤당 10백만원	100	-	-	어촌(업)계
경남추천상품(QC) 수산물활성화 지원	한도액 없음	60	-	40	경남 추천상품 지정 품목 업체
공동브랜드 (청경해) 박스 등 제작지원	한도액 없음	60	-	40	청경해 브랜드 사용지정 품목(업체)
수출주력품종 시장개척지원	한도액 없음	80	-	20	수협, 수산물 수출업체, 경남도QC지정업체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	한도액 없음	80	-	20	수협, 수산물 수출업체, 경남도QC지정업체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	개소당 50백만원	80	-	20	어촌계
다목적 해상공동 작업대 설치지원	개소당 100백만원	80	-	20	어촌계
불가사리 구제사업	한도액 없음	100	-	-	어업인, 어촌계, 지역환경단체 등

※ 상기 사업 외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을 시는 우리군 경제수산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 및 지원율은 2017년도 기준이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사 업 계 획 서

## 1. 사업의 개요

○

##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

##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 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별지 제3호서식]

### 보조사업 이력서 (제15조 관련)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해양수산 보조 및 용자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 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 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하동군 공고 제2018-15호

공 고

하동군공인조례 제6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인신조 등록 및 폐기공인을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1. 공인 사용 및 폐기일 : 2018. 1. 3.
- 2. 신조 및 폐기사유 : 회계관계 공무원 공인 및 민원발급용 공인 개설 및 하동군보건소장의인의 파손으로 인한 폐기
- 3. 신조 · 폐기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신조	폐기
신조 공인	하동군 보건소 장의인	한글전서체 2.1cm정사각형		
신조 공인	보건소세입 세출외현금 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정사각형		
폐기 공인	하동군보건소장의인	한글전서체2.0cm 정사각형		

- 4. 신조공인 사용일 : 2018. 1. 3. (공고후)  
2018년 1월 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2018- 21호

## 하동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하동군에서는 비수기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산업 확대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월 4일

하 동 군



### 지원개요

- 지원기간 : 2018. 1. 1. ~ 2. 28. / 6. 1. ~ 8. 31. / 11. 1. ~ 12. 31.
-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지원근거 : 「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 2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 ○ 지원조건

- 1) 관내 당일 관광 또는 숙박이 포함된 여행 일정을 하동군(문화관광실)에 사전 통보하여 협의가 된 여행업체(학교)로서,
- 2) 타 지역 내국인·외국인 단체관광객(내국인 30인, 외국인 10인이상) 수학여행단 50인이상, 기차여행객(4인이상 상품) 유치여행사로 아래 조건의 업소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 관내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숙박업소
  - 공중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일반 숙박업소
  -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숙박시설이나 교육원, 체험마을

- 관내에 소재한 음식점소

※ 내·외국인 동반인 경우 내-외국인 총원 30인 이상인 경우에 각각 기준에 따라 지급

※ 기차관광의 경우 관내 기차역을 통해 하동군 관내를 관광하는 상품에 해당

3) 관광지(시설) 및 숙박시설 확인

- **당일관광** : 관내 <유료관광지(시설) 1개소 + 식당 1식 이상>
- **숙박관광** : 관내 <유료관광지(시설) 2개소 + 식당 2식 이상 + 숙박 1박 이상>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첨부(간이영수증 불가)

□ **지원제외**

- **여행사 관계자**(기사, 가이드, 안내원 등) 및 관광목적이 아닌 사업상 방문
-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 및 투어
- **하동군 초청 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
-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 관내 관광일정을 **하동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관광
- 관광이나 **여행목적이 아닌 경우**와 지원조건에 맞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관광**
-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향후 완전 배제
- 지원 방법 : 보상제(여행사에 관광객 1인당 일정액 지급)
- 지원기준 및 지원액

구 분	지원기준	지원규모(1인당) (원)			지원조건
		당일	1박	2박이상	
내국인 단체	30명이상	-	10,000	15,000	○ <b>당일관광</b> 유료관광지(시설)(1), 음식업소(1) 이용
외국인 단체	10명이상	-	15,000	25,000	
수학 여행단	50명이상	-	5,000	10,000	○ <b>숙박관광</b> 유료관광지(시설)(2), 음식(2)·숙박업소(1) 이용
기차여행	4인이상	5,000	10,000	15,000	



3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 단체관광계획서 제출

- 제출시기 : 여행시작일 7일 전까지
- 제출서류 : 【서식1】 : 단체관광계획서, 여행일정표,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 신청방법 : 우편, 팩스, E-mail, 직접방문
  - 우 편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문화관광실(슬로시티담당)
  - 팩 스 : 055)880-2369(팩스 전송 시 반드시 전화 확인)
  - 이메일 : 담당자 지정 메일(사전 전화 확인) ☎055)880-2378

□ 인센티브 지급 신청

- 신청시기 : 여행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 ※ 단 12월 인센티브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지출완료 되어야 하므로 사전 협의하여 지급 신청서 조기 제출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 제출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문화관광실(슬로시티담당)
- 지급시기 :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구비서류
  - 【서식2】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원본) 1부
  - 여행일정표 및 여행상품 안내문 1부
  - 【서식3】 관광객 숙박확인서 1부(원본)
  - 【서식4】 단체관광객(여행자) 명단 1부

- 【서식5】 단체관광객 방문 증빙 사진대장 1부
- 숙박비 지급 증빙서류(원본)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제출, 간이영수증 사용불가)
- 유료관광지 입장권 또는 결제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통장사본 1부

※ 구비서류 사본 제출시 원본 대조필 반드시 날인

※ 유의사항

- 여행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을“제3자”에게 제공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유념하시어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람.

## 4

## 기타사항

- 가.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나.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하동군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의함
- 다. 우편으로 신청 시 우편물이 도달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함
- 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적용하지 않음.
- 마.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신청이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 순으로 우선 지원함.
- 바. 숙박업소 등과 담합하여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고 향후 인센티브 지원에서 완전 배제함.
- 사. 인센티브 신청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별지 제1호서식]

## 단체 관광 계획서

여행사 일반사항

여행사명		대표자	
업체주소	( ㉸ )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단체 관광 계획

[단위 : 명]

관광기간	방문객수		주요 관광지	인 슬 자		비 고
	내국인	외국인		성 명	연락처	

수학여행 계획

[단위 : 명]

학교명	인원 수	주요관광지	인 슬 자		비 고
			성 명	연락처	

우리 여행사의 하동군 단체관광계획을 위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여행업체명  
          대    표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여행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여행일정표 1부

※ 공지사항    관광객 팀별로 각 1건 서류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

여행사 일반사항

여행사명		대표자	
업체주소	( 〇〇 )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거래은행		계좌번호	

관광객 유치현황

[단위 : 명]

국적	숙박일자	숙박 시설명	숙박객 수			관광지 (2개소 이상)	인솔자	
			계	관광객	여행사 관계자		성명	연락처

수학여행 관광객 유치현황

[단위 : 명]

학교명	숙박일자	숙박업소명	숙박객수				비고
			계	학생	교사	여행사관계자	

※ 여행자명단 기재사항이 부실한 경우에는 관광객 10명당 1명 기준으로 여행사 관계자로 간주합니다.

보상금신청액 : 금                      원

위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여행업체명  
          대    표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행일정표 및 여행상품 안내문 1부.</li> <li>2. 숙박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여행자 명단(별지 제4호 서식) 각1부.</li> <li>3. 관광지방문 증빙 내역서 1부(별지 제5호 서식)</li> <li>4. 사업자등록증 및 여행업등록증 사본 각1부.</li> <li>5. 통장 사본 1부</li> </ol>

※ 공지사항    관광객 팀별로 각 1건 서류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동군 관광 일정 계획 “예시”

## □ 1박 2일

		시 간			관 광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1 박 2 일	첫 째 날	08:00	12:00	240	○ 서울 → 하동읍(하동시외버스터미널) 도착	
		12:00	13:00	60	○ 중식(식당 이름 기재)	
		13:00	15:00	120	○ 삼성궁 이동 및 관람	
		15:00	16:00	60	○ 지리산생태과학관, 금오산 레포츠시설, 구제봉	
		16:00	17:00	60	○ 하동읍 이동	
		17:00	~		○ 석식 및 취침 (식당 이름 및 숙박업소 기재)	
	둘 째 날	07:00	08:00	60	○ 조식(식당 이름 기재)	
		08:00	09:00	60	○ 이동(화개)	
		09:00	11:00	120	○ 화개장터	
		11:00	13:00	120	○ 쌍계사 / 불일폭포 / 대도파라다이스	
		13:00	14:00	60	○ 중식 및 휴식(식당 이름 기재)	
		14:00	16:00	60	○ 최참관댁 / 평사리 공원 / 차문화센터 / 토지문학관	
		16:00	18:00	120	○ 송림공원 / 하동포구공원	
		18:00	~		○ 하동출발	

### □ 당일

	시 간			관 광 내 용	비고
	부터	까지	소요		
당 일	07:00	11:00	240	○ 서울 → 하동읍(하동시외버스터미널) 도착	
	11:00	12:00	60	○ 하동송림공원 / 하동포구공원	
	12:00	13:00	60	○ 중식(식당 이름 기재)	
	13:00	14:00	60	○ 화개장터	
	14:00	16:00	120	○ 쌍계사 / 불일폭포 / 대도파라다이스 / 토지박물관	
	16:00	17:00	60	○ 최참판댁 / 평사리공원 / 차문화센터 / 구재봉	
	17:00	17:30	30	○ 하동버스터미널로 이동	
	17:30	~		○ 하동출발	

※ 유료관광지 : 최참판댁(박경리문학관), 쌍계사, 지리산생태과학관, 삼성궁(청학동)

[별지 제3호서식]

### 관광객 숙박확인서

여행사명		대표자			
업체주소	( 〇〇 )				
관광객 숙박현황		[단위 : 명]			
국 적	숙박일자	숙 박 객 수			비고
		계	관광객	여행사관계자	
<p>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여행사명</p> <p style="text-align: center;">대 표 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숙박업소대표 귀하</p>					
<p>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확인자: 숙박업소명</p> <p style="text-align: center;">주 소</p> <p style="text-align: center;">대 표 자 (서명 또는 인)</p>					
※ 공지사항	1. 관광객 팀별로 각 1건 서류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숙박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숙박업소 이용 증빙서 1부(카드결제내역,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단,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음.

<붙임> 숙박업소 이용 증빙서

증빙서류

증빙종류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매출전표 <input type="checkbox"/> 현금영수증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	---

증빙서류(원본) 붙이는 곳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 유료관광지 방문확인서

관광지명 :

증빙서류(입장권 또는 영수증 첨부)

하 동 군 청 귀하



# 하동군 유료관광지 현황

## ■ 쌍계사 입장료 (055-883-7019)

- 성인 2,500원, 청소년·군인 1,000원, 어린이 500원
- 30인 이상 단체 : 성인 2,200원, 청소년·군인 800원, 어린이 등 400원

## ■ 삼성궁 입장료 (055-884-1279)

- 성인 7,000원, 청소년·군인 4,000원, 어린이·노약자·유공자 3,000원
- 30인 이상 단체 : 성인 6,000원, 청소년·군인 3,000원, 어린이 등 2,500원

## ■ 최참판댁 입장료 (055-880-2960)

- 성인 2,000원, 청소년·군인 1,500원, 어린이·노약자·유공자 1,000원
- 20인 이상 단체 : 성인 1,500원, 청소년·군인 1,000원, 어린이 등 500원

## ■ 지리산 생태과학관 입장료 (055-880-2954)

- 성인 1,000원, 청소년·군인 800원, 어린이·노약자·유공자 600원
- 20인 이상 단체 : 성인 800원, 청소년·군인 600원, 어린이 등 400원

### ※ 최참판댁과 연계이용 시 입장료

- 성인 2,600원, 청소년·군인 2,000원, 어린이·노약자·유공자 1,400원
- 20인 이상 단체 : 성인 2,000원, 청소년·군인 1,400원, 어린이 등 800원

## ■ 하동군 관광안내소

- 화개장터 관광안내소 : 055-880-5722
- 청학동(삼성궁) 청암 관광안내소 : 055-882-5379
- 약양 관광안내소 : 055-880-2950

※ 이병주 문학관 : 055-882-2354

※ 구재봉 자연휴양림 : 070-8855-8010. 8011

※ 하동군 판소리 기념관 : 055-882-2342

## 하동군 유료이용시설 현황

### ▣ 하동레일파크 이용료 (055-882-2244)

하절기		동절기		비고
월요일~목요일	금,토,일,공휴일 전날, 공휴일	월요일~목요일	금,토,일,공휴일 전날, 공휴일	
2인승 : 25,000	2인승 : 30,000	2인승 : 20,000	2인승 : 25,000	
4인승 : 30,000	4인승 : 35,000	4인승 : 25,000	4인승 : 30,000	

#### ※ 할인

- 50% 할인 : 국가유공자, 하동군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
- 30% 할인 : 하동군민, 장애인
- 20% 할인 : 2인승 10대 이상, 4인승 8대 이상을 한 회차에 동시 이용

### ▣ 금오산 짚와이어 이용료 (055-884-7715)

	평일	주말 및 공휴일	비고
성인	40,000	45,000	
청소년 (14세이상~19세이하)	35,000	40,000	
어린이 (8세이상~13세이하)	30,000	35,000	

▣ 금오산 스윙점프 이용료 (055-883-1064~5)

구 분	기 준	개 인	단체 (20인 이상)	비고
빅스윙	어른(20세이상)	18,000	16,000	
	청소년(14세이상~19세이하)	16,000	14,000	
	어린이(8세이상~13세이하)	14,000	12,000	
파워팬/킥점프	어른(20세이상)	3,000	2,500	
	청소년(14세이상~19세이하)	2,500	2,000	
	어린이(8세이상~13세이하)	2,000	1,500	

하동군 공고 제2018-30호

###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 및 하동군주민투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와 주민투표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
43,183명 (내국인 43,158명 / 외국인 25명)	6,169명 이상

- ▲ 내국인 : 2017년 12월 31일 현재 하동군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 ▲ 외국인 : 2017년 12월 31일 현재 하동군에 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자
- ▲ 하동군주민투표조례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 주민투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청구를 실시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로 한다.

2018년 1월 8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2018-30호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 제5항,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1. 하동군수

읍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총수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비 고
		최소기준	15/100	
합 계	43,178		6,477	- 5개 이상의 읍면에서 읍면별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15/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최소기준 산정 · 기본은 읍면별 총수 * 15/100 · 그 총수가 1만분의 5 미만인 경우에 서명을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1만분의5로 한다. $(5 \div 10,000) \times 43,178$ $= 22$ 명(우리군 없음) - 1만분의 100을 초과하 는 경우에 서명을 받아 야 할 서명인 수는 1만분의 100으로 한다. $(100 \div 10,000) \times 43,178$ $= 432$ 명
하동읍	8,992	432		
화개면	3,142	432		
악양면	3,548	432		
적량면	1,942	292		
횡천면	1,935	291		
고전면	2,250	338		
금남면	3,606	432		
금성면	3,105	432		
진교면	5,581	432		
양보면	1,830	275		
북천면	1,751	260		
청암면	1,368	206		
옥종면	4,128	432		



2. 하동군의회

선거구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총수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비 고
지역선거구	읍면		최소기준	20/100	
가 선거구	합 계	8,632		1,727	- 1개 이상의 면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아야 함 - 1만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 서명을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1만분의 100으로 한다. (100 ÷ 10,000) × 8,632명 = 87명
	화개면	3,142	87		
	악양면	3,548	87		
	적량면	1,942	87		
나 선거구	합 계	13,177		2,636	- 1개 이상의 면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아야 함 - 1만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 서명을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1만분의 100으로 한다. (100 ÷ 10,000) × 13,177명 = 132명
	하동읍	8,992	132		
	횡천면	1,935	132		
	고전면	2,250	132		
다 선거구	합 계	12,292		2,459	- 1개 이상의 면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아야 함 - 1만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 서명을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1만분의 100으로 한다. (100 ÷ 10,000) × 12,292명 = 123명
	금남면	3,606	123		
	금성면	3,105	123		
	진교면	5,581	123		
라 선거구	합 계	9,077		1,816	- 2개 이상의 면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아야 함 - 1만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 서명을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1만분의 100으로 한다. (100 ÷ 10,000) × 9,077명 = 91명
	양보면	1,830	91		
	북천면	1,751	91		
	청암면	1,368	91		
	옥종면	4,128	91		

2018년 1월 8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2018-30호

#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하동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17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총수와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의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기관명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권자 총 수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 (총수의 1/50 이상)	비고
하동군	43,178명	864명 이상	

2018년 1월 8일

하 동 군 수



# 공 고 (안)

하동군 공고 제58 호

## 2018년 하동군 양성평등사업 지원 공고

하동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2018년 하동군 양성평등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17.

### 하 동 군 수

#### 1. 신청자격

가. 하동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양성평등기본법」 및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규정된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 하동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단체
- 기타 양성평등과 여성권의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 ※ 단, 정당, 조합, 친목단체등은 제외
  - ※ 주된 목적은 법인(단체)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

#### 2. 지원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 가. 지원단체 : 1개 단체 1개 사업 신청 원칙
- 나. 지원규모 : 43백만원(사업의 규모, 성격에 따라 차등 결정)
  - 사업건당 5백만원 이내 지원
  - 사업건당 지원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내용별 차등 지원
    - ⇒ 지원금액은 심의를 통하여 결정
  - 사업비 자부담 규모 : 총사업비의 5%이상 필수

다. 지원사업 유형

- 양성평등 문화 촉진
-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문화 조성
- 여성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
- 취약계층 여성복지 향상
- 여성안전 권익 증진
-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 사업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심의 의결)

**※ 특화사업 및 신규사업등 참신한 사업 우선 선정**

라. 사업유형별 내용

사 업 유 형	사 업 내 용
양성평등 문화 촉진	○ 양성평등 의식 함양교육 ○ 양성평등 의식개선 및 문화확산 ○ 성인지 정책 확산을 위한 환경조성 등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문화 조성	○ 일·가정 양립의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 사업 ○ 가족친화 사회환경 문화조성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지원 ○ 한부모, 미혼모 가족에 대한 지원 등
여성경제활동 및 사회참여확대	○ 경력단절 여성 취·창업지원 ○ 취업강좌·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 여성의 사회적·정치적 역량강화사업 등
취약계층 여성복지 향상	○ 고령·빈곤 여성 복지지원 ○ 결혼이주 여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등
여성안전 권익증진	○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성매매 피해자 자립지원 및 예방 등 ○ 여성이 안전한 환경조성 등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사업	○ 저출산 해결을 위한 의식개선 ○ 출산정책 홍보사업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위원회 심의 의결

마. 지원제외 대상사업

- ①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사회교육기관 등과 유사중복사업

- ② 단순 집합교육 및 일회성 행사위주 사업(세미나, 캠페인, 연수, 답사 등)
- ③ 단체의 홍보, 단체(법인)설립 기념행사, 단체(법인) 월례행사 등
- ④ 연구용역 및 위탁비, 기타 단체 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비

3. 사업기간 : 2018. 2월 ~ 11월

4. 신청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1. 31(수) ~ 2. 6(화) 평일 09:00 ~ 18:00 【토·공휴일은 제외】

나. 제출서류

- ① 양성평등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 요약서 1부
- ③ 사업세부 계획서 1부 ④ 법인(단체)의 정관 사본 1부
- ⑤ 법인(단체)현황 1부 ⑥ 2017년도 주요사업(활동) 실적 1부
- ⑦ 법인(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제출서식은 하동군 홈페이지(<http://hadong.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 받아 사용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라. 접 수 처 : 하동군 주민행복과 여성정책부서

- ① (52333)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880-2313)
- ②

5.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신청단체 적격심사(제출서류, 단체 등록여부 확인, 사회단체보조금, 기타 사업 중복여부 등)후 군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나. 심사기준

- 사업의 목적성과 적합성
- 사업내용의 참신성
- 사업계획의 우수성
- 단체의 전문성 및 수행능력
- 사업비 선종의 적정성 및 자부담 비율
- 사업의 파급효과성, 전년도 사업실적

○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이나 기타 사업과 중복여부 확인 등

6. 심사결과 발표 : 2018. 2월중

가. 하동군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 단체별 개별 통지

7. 사업비 교부 및 정산

가. 사업 개시 15일전까지 사업비 교부 신청에 의하여 지원

나. 자부담 금액 단체명의 계좌로 입금확인 후 사업비 교부

다.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라. 보조금관리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

8. 기타참고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기금 환수 조치

나. 양성평등사업 지원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법인(단체)과 사업비를 교부받고 당해연도 사업정산 시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된 사실이 발견됐을 경우 익년도 지원 불가

다. 공모에서 선정된 단체는 사업시행시 모든 홍보물에 『2018년 하동군 양성 평등사업 지원』 표기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선정심사 내용은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음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

제2018-78호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18년 01월 일

하 동 군 수



1. 사 업 목 적: 농경지 침수방지 및 경지이용률 증대, 영농환경개선
2. 사 업 지 구 명: 월진지구 배수개선사업
3. 위           치: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일원
4. 사업시행면적: 수혜면적 59.5ha
5. 사업개요:
  - 배수장 : 배수장 신설(Q=2.0m<sup>3</sup>/s), 펌프게이트 신설(Q=1.2m<sup>3</sup>/s)
  - 전기실 등
  - 배수로 : 2조 1,178m
  - 매립 : 5ha
6. 총 사 업 비: 5,260백만원
  - 국       고: 5,260 백만원
  - 지 방 비: -    백만원
7. 사 업 기 간: 2017. ~ 2020(4년)
8. 시행계획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서부지사